



# LEGAL UPDATE
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5-4호

Sep. 2025

## 보험 판례

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 및 시사점  
- 대법원 2025. 8. 14. 선고 2024다289680 판결 -

### 1. 사안의 개요

- 원고(보험계약자)와 피고(보험회사)는 피보험자를 원고의 자녀(이하 '피보험자')로,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각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 사항 중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
-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'계약 후 알릴 의무'를, 제16조 제1항 제2호는 계약 후 알릴 의무 불이행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함을 각 규정하고 있음(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, 제16조 제1항 제2호를 통칭하여 '이 사건 약관 조항')
- 피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았으나, 그 후 피보험자가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만취 상태로 운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음
-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, 피고는 원고에게 '피보험자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
-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에 대한 명시·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관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시·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의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만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

### 2. 법원의 판단

- 1심 법원은,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·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음을 전제한 뒤, 피보험자의 이 사건 약관조항상 '계약 후 알릴 의무'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(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1. 25. 선고 2021가단5181795 판결)

-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(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8. 23. 선고 2022나77691 판결)
- 그러나 대법원 2025. 8. 14. 선고 2024다289680 판결은, 보험계약자(원고) 또는 피보험자가 **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·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(및 이에 따라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)에 관계없이 위 상법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**을 전제한 뒤, 피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과 함께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별도의 계약해지 사유로 주장해온 이상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필요함에도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·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·환송함

### 3. 시사점

-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중요한 사실의 '통지의무'와 관련하여, **보험자의 약관에 대한 명시·설명의무 이행 여부 및 이에 따른 약관상 '계약 후 알릴의무'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와 무관하게,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'통지의무' 위반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**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. 즉, **약관상 '계약 후 알릴 의무'와 상법상 '통지의무'는 별개의 계약 해지 사유로 병존할 수 있으며**, 보험자가 두 사유를 모두 주장한 경우, 법원은 양자에 대해 각각 판단해야 함을 강조한 판결임
- 이는 상해보험에서 '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행위'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'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례의 주류적 입장과도 궤를 같이 함. 참고로 '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행위'가 곧바로 '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'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, 오토바이 사용의 계속성, 빈도 등에 따라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도 존재함
- 이는 보험 실무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계약 후 사정 변경에 따른 위험 증가 사실을 적시에 통지받지 못한 경우,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**상법상 통지의무 위반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인정될 수 있음**을 확인한 것으로, 향후 보험회사들은 약관에 대한 명시·설명의무 이행 여부 및 이에 따른 약관상 '계약 후 알릴의무'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권 행사와 별개로,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그 자체를 적극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 또한 보험회사가 계약해지를 통지할 경우 해지의 근거로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'계약 후 알릴의무'에 관한 약관조항 모두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
-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입장에서, **보험계약 체결 후 중요한 위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, '계약 후 알릴의무'에 관한 보험약관 조항의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상법 제652조 제1항 그 자체에 기하여 보험회사에 이를 성실히 통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**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